

대 법 원

제 3 부

판 결

사 건 2018도19375 가. 정치자금법위반
나.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

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

상 고 인 피고인들

변 호 인 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(피고인 2를 위하여)
담당변호사 이동신 외 1인

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8. 11. 15. 선고 2018노582 판결

판 결 선 고 2019. 2. 14.

주 문
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1. 피고인 1의 상고

피고인 1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,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.

